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

요약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기관이자 정부의 정책에도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전력산업의 핵심 기관이다.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춰봤을 때 전력거래소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자 회원조직의 형태를 갖춘 사단법인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산업부의 정책목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회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산업부의 의사결정 참여 통로는 보장되어 있는 반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와 비교했을 때 발전원별, 사업부문별 회원사가 현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다양한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위원회, 회원총회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사회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의 자격은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출자를 한 회원사인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임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위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회원사 임원 중 누구라도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있어야 한다. 선임방법으로는 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방법,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을 받아 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방법, 회원총회 의결로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원회

전력시장·계통운영에 대한 규칙·규정의 개정을 의결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사 중 대다수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안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조정하는 실무협의회의 구성도 이와 유사하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실무협의회의 검토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건을 조정하는 실무협의회에는 다양한 회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결정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며, 실무협의회의 검토 내용도 공개됨이 바람직하다.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특성에 비춰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나 의결사항이 한정되어 있으며, 전력거래량에 비례한 의결권 배분방식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회원사들의 소수회원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을 회원총회에 부여하고,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회원권 확대 및 행사 요건의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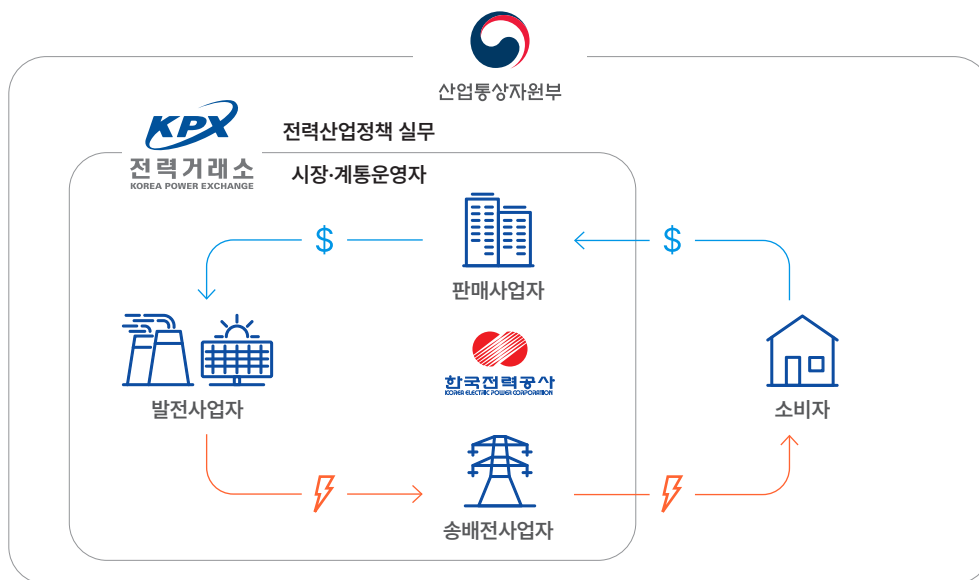
I. 전력거래소의 지위 및 거버넌스 현황

1. 지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자 회원조직의 형태를 갖춘 사단법인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기관으로, 2001년, 한국전력공사가 자연 독점해 온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당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발전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 발전회사들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서, 전력시장과 계통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관의 필요에 따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입찰 조건과 거래가격 기준 등을 결정하며, 전력을 유통하는 '계통'에서 시간 대별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 및 생산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천 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의 거래와, 수십만 개 발전기의 응동이 전력거래소의 결정과 통제에 따른다.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전력산업 정책에도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력산업에서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역할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의 역할



전력거래소의 설립 근거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¹. 위 법률들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며, **회원조직의 형태를 갖춘 사단법인**이라는 법적 성격을 지닌다.

1 「전기사업법」 제35조, 제38조

전력거래소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6개사의 출자로 설립되었는데, 공기업에 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공기업과 달리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에, 절반 미만인 경우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² 공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업성을 띠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공익창출에 더 비중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곳으로서, 주무부처의 정책목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³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산업부의 정책에 맞춰 전력시장·계통운영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 구분

구분	특징	기관
공기업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절반 이상, 상업성 높음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절반 미만, 공익창출 집중	전력거래소

한편, 2025년 기준 45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면서 회원사로 구성된 기관은 전력거래소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43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데,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의 의사가 결정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반대로 전력거래소는 법인의 의사가 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되는 사단법인의 특성에 따라, 전력시장 및 계통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사들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⁴

이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현행 거버넌스가, 산업부로부터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자 수천 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특성에 비춰 그 구성과 운영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2. 거버넌스 현황: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이해관계 편중

전력거래소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원총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 예산 및 운영계획, 주요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총회부의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이사회는 이사를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정부대표, 근로자대표, 회원대표, 공익대표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전력시장·계통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수립하는데, 주요 위원회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의결하는 규칙개정위원회, 발전기에 지급될 정산금을 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 전기설비의 기술적 특성자료에 대해 의결하는 계통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각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와 유사하게 전력거래소 임직원, 산업부 공무원, 회원대표,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시행령 제7조

3 이윤석.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혁신과 지식창출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24(3), 한국지식경영학회, 2023, 38.

4 전력거래소 외에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유일인데, 그 이유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1974.1.~1979.1.)가 회원으로 구성된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1979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설립하면서 회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만 남게 되었다.

회원총회는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회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사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정회원으로 한정된다.⁵

이사회 구성원⁶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이사장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공익대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이사장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공익대표)	(주)도화엔지니어링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부이사장	전력거래소(전 산업부)	비상임이사(회원대표)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정부대표)	산업부	비상임이사(회원대표)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근로자대표)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회원대표)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공익대표)	우리자산운용 (전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위원회 구성원⁷

규칙개정위원회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위원장	전력거래소	위원(회원대표)	포스코인터내셔널
위원(당연직)	전력거래소	위원(외부전문가)	건국대학교
위원(당연직)	산업부	위원(외부전문가)	단국대학교
위원(회원대표)	한국전력공사	위원(외부전문가)	법무법인 광장
위원(회원대표)	한국남부발전		

비용평가위원회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위원장	고려대학교	위원(전문가)	중앙대학교
위원(당연직)	전력거래소	위원(전문가)	단국대학교
위원(당연직)	산업부	위원(전문가)	법무법인 화우
위원(회원대표)	한국전력공사	위원(전문가)	한국전기연구원
위원(회원대표)	한국동서발전		

5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수소법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및 공급하는 자(수소발전사업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6 2025년 5월 기준, 전력거래소 자료

7 2025년 6월 기준, 전력거래소 자료

계통평가위원회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위원장	가천대학교	위원(전문가)	연세대학교
위원(당연직)	전력거래소	위원(전문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원(당연직)	산업부	위원(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위원(당연직)	한국전력공사	위원(전문가)	전북대학교
위원(당연직)	한국전력공사	위원(전문가)	한국에너지공단
위원(회원대표)	한국남부발전		

회원총회 구성원⁸

구분		회원수
정회원	발전사업자	6,609
	송배전·판매사업자	1
	자가용설비설치자	38
	구역전기사업자	8
준회원		9
총계		6,665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주무부처인 산업부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사회에는 정부대표 1인, 산업부 출신의 부이사장 1인이, 각 위원회에는 산업부 공무원 1인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력시장운영규칙 변경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⁹ 공익대표 및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의 임명도 산업부장관에 의해 이뤄지므로¹⁰, 산업부는 주무부처로서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회원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회원사는 대부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경우,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3인 모두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발전자회사 소속이며,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중 2인 역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주요 위원회의 구성도 유사한데, 회원대표 위원 6인 중 5인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소속이며, 특히 계통평가위원회의 경우 회원대표 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2인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총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배분하기 때문에, 유일한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50%의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가 과반수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8 2024년 12월 기준, 전력거래소 자료

9 「전기사업법」 제43조 제2항

10 정관 제36조 제4항, 제7항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던 2001년 당시에는 전체 10개 회원사 중 대부분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자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회원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현재 회원사가 6,600여 개에 이르고, 민간 발전회사의 발전량 비중이 30%를 초과¹¹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입장을 전체 회원사의 의사로 해석할 수 없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전력공사와 다른 회원사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사 구성¹²

구분		회원수	설비용량(MW)
판매사업자		1	
발전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6	85,383
	일반 발전사	23	29,55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6,499	12,165
	집단에너지사업자	30	9,013
	기타발전사	51	721
구역전기사업자		8	1,027
기타		38	5,952
합계		6,656	143,820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력거래소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사 반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의 개선방안은 전력시장 전문가들¹³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공통된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1 윤대원. “민간 영향 갈수록 커지는 에너지 시장...못 따라가는 정책” 『전기신문』, 2024.8.8,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380>.

12 2024년 12월, 정회원 기준, 전력거래소 자료 재구성

13 전문가 명단은 부록 참조

II. 이사회 개선방안: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 확대 및 선임방법 개편

1. 문제점: 출자에 따른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 제한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2인, 정부대표 비상임이사 1인,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1인,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3인,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과 구별되는 점은 회원사로 구성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를 둔다는 점이다. 임명 방법에 있어서도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달리 정하고 있다. 근로자대표 및 공익대표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인 산업부 장관이 임명하며, 정부대표는 정관상 당연직으로 정해진다.¹⁴ 한편, 회원대표는 정관에서 '부칙(2001. 4. 2.)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로 한정된다.¹⁵

비상임이사란 법인의 이사 중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원으로 서 법인의 의사결정을 견제 및 감시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¹⁶ 즉, 전력거래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회원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공정한 시장·계통운영이라는 기관 전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임원만 참여하는 구조는, 경쟁체제가 도입된 발전부문에서 특정 발전사의 입장만 반영된다는 점과, 판매부분의 유일 회원사인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발전사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발전부문의 독립적인 의사 반영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2. 개선방안: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 확대 및 선임방법 개편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 확대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전체 회원사를 대표해야 하므로, 설립 당시 출자 회원사로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라면 누구라도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특히 전력시장에서의 거래 주체인 발전회사와 판매회사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발전사의 참여 필요성이 크다.

14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3항

15 정관 제36조 제3항, 부칙(2001. 4. 2) 제2조

16 주효진,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A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제29권 제4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3.

또한 전력거래소를 설립하면서 시장개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가 출자금을 납입했으나 운영재원은 주로 전력거래수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점,¹⁷ 정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외에도 전력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G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출자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설립 당시 출자 회원사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방법 개편

현재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설립 당시 출자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가 되도록 당연직으로 정하고 있다. 2022. 4. 26. 전력거래소가 위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는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중에서 산업부장관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었다.¹⁸ 따라서 정관 개정 전과 같이 전체 회원사 가운데 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방법, 다른 공익대표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전체 회원사를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총회 의결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력거래소 설립 기본계획(2001. 2. 16.)에서도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원총회 의결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에 의해서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¹⁹ 발전원별, 사업부문별 회원사들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회원대표 이사직 구성을 확대 및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17 설립 당시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총 1,278억 원의 출자금을 납입했으나, 2024년 한 해 동안 회원사들이 납부한 전력거래수수료는 1,138억 원으로 추정된다.

- 출자금 1,278억 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전력거래소 자본금 및 주주 현황

- 전력거래수수료 1,138억 원 추정액: 전력거래소 제24기 정기총회 안건 “제2025-2호 : 2025년도 회원 의결권 배정(안)”에 따른 구매측 및 공급측 전력거래량에 전력거래수수료를 곱한 금액(1,100,887GWh x 0.1034원/kWh)

18 2021. 7. 15. 개정 정관 제36조 제3항

19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출 권한을 회원총회에 부여할 경우, 「상법」상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의사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력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감사는 모두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치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달리 전력거래소 회원사들이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에 한정될 것이므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에 있어 소수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위원회 개선방안: 회원사 중심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정보공개

1. 문제점: 민간 회원사들의 참여 제한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산하에 여러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세부 안건 내용을 검토·조정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는 모두 이사회와 유사하게 전력거래소 직원, 산업부 공무원, 회원대표,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개최 전 안건의 세부적 내용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규칙개정위원회, 비용평가위원회, 계통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회원대표 위원 6인 중 5인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회사 소속이다. 각 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 구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회원사 임직원 13인 중 9인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소속이다. 즉,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모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가 회원사를 대표하는 자리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협의회 구성원²⁰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직위	소속	소속	소속
위원장	전력거래소	위원(회원 임직원)	한국중부발전
위원(직원)	전력거래소	위원(회원 임직원)	평택에너지서비스
위원(직원)	전력거래소	위원(전문가)	한양대학교
위원(공무원)	산업부	위원(전문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원(회원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위원(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위원(회원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위원(전문가)	법무법인 에이앤랩
위원(회원 임직원)	한국수력원자력		

20 2025년 6월 기준, 김종민 의원실 제공 자료 재구성

비용평가실무협의회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위원장	전력거래소	위원(회원 임직원)	한국서부발전
위원(직원)	전력거래소	위원(회원 임직원)	파주에너지서비스
위원(직원)	전력거래소	위원(전문가)	상명대학교
위원(공무원)	산업부	위원(전문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원(회원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위원(전문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원(회원 임직원)	한국수력원자력	위원(전문가)	홍익대학교
위원(회원 임직원)	한국남동발전		

계통평가실무협의회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위원장	전력거래소	위원(회원대표)	한국남부발전
위원(직원)	전력거래소	위원(회원대표)	포천파워
위원(직원)	전력거래소	위원(회원대표)	GS EPS
위원(공무원)	산업부	위원(전문가)	광운대학교
위원(송전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위원(전문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원(송전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위원(전문가)	한국에너지공단
위원(배전사업자)	한국전력공사		

각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검토·심의 내용도 비공개되어 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위원회의 경우 회의개최 및 소집사항과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야 하나, 회의록 내지 의사록은 위원회 위원들에게만 공개된다.²¹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공개되는 바도 전무하다.

공개되는 심의·의결 결과를 살펴보면 규칙개정위원회의 경우 참석위원, 안건별 제안자, 제안내용,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규칙을 해당 내용으로 개정한 구체적 이유나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비용평가위원회와 계통평가위원회의 경우 참석위원, 안건 제목, 가결 여부에 대해서만 공개되어 있어,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제한적이다.

21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2.2.1조 제5항, 제2.2.2.6조, 제5.10.7조 제5항, 제5.10.12조, 제9.2.4조, 제9.3.3조

위원회 회의록²²

규칙개정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양수발전기 계획초과 전력량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진급3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5-진급3-1호						
개최일시	2025년 3월 11일 14:00						
제안자	한국수력원자력						
제안내용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로 양수발전 계획량을 초과한 발전 및 양수 전력량에 대한 정산 규정 개정 ⇨ [별표 2] I. 1. 다. 및 I. 3. 나. ○ (양수발전) 거래일 최고MP ⇒ 양수발전 실적시간대 최고MP ○ (양수동력) 발전시간대 최저MP ⇒ 양수동력 실적시간대 최저M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개 정</th> </tr> </thead> <tbody> <tr> <td> [별표2] 정산 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다. 양수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 총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최고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_i = \text{Max}(MP_{i,24}) \times 1,000 \times \text{Max}(XESO_i - PV_i, 0)$ <신설> </td> <td> [별표2] 정산 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다. 양수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 총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양수발전 실적시간대 최고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_i = \text{Max}(MP_{i, \text{ypt}}) \times 1,000 \times \text{Max}(XESO_i - PV_i, 0)$ $MP_{i, \text{ypt}}$: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양수발전한 실적시간대의 양수발전기 MP_{it} </td> </tr> <tr> <td>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발전시간대 최저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PE_i = \text{Min}(MP_{i,9-24}) \times XPE_i \times \eta_i \times 1,000 + \dots$ <신설> </td> <td>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양수동력 실적시간대 최저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PE_i = \text{Min}(MP_{i, \text{ypt}}) \times XPE_i \times \eta_i \times 1,000 + \dots$ $MP_{i, \text{ypt}}$: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동력한 실적시간대의 양수발전기 MP_{it} </td> </tr> </tbody> </table>	기 존	개 정	[별표2] 정산 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다. 양수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 총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최고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_i = \text{Max}(MP_{i,24}) \times 1,000 \times \text{Max}(XESO_i - PV_i, 0)$ <신설>	[별표2] 정산 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다. 양수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 총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양수발전 실적시간대 최고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_i = \text{Max}(MP_{i, \text{ypt}}) \times 1,000 \times \text{Max}(XESO_i - PV_i, 0)$ $MP_{i, \text{ypt}}$: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양수발전한 실적시간대의 양수발전기 MP_{it}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발전시간대 최저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PE_i = \text{Min}(MP_{i,9-24}) \times XPE_i \times \eta_i \times 1,000 + \dots$ <신설>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양수동력 실적시간대 최저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PE_i = \text{Min}(MP_{i, \text{ypt}}) \times XPE_i \times \eta_i \times 1,000 + \dots$ $MP_{i, \text{ypt}}$: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동력한 실적시간대의 양수발전기 MP_{it}
기 존	개 정						
[별표2] 정산 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다. 양수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 총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최고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_i = \text{Max}(MP_{i,24}) \times 1,000 \times \text{Max}(XESO_i - PV_i, 0)$ <신설>	[별표2] 정산 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다. 양수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 총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양수발전 실적시간대 최고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_i = \text{Max}(MP_{i, \text{ypt}}) \times 1,000 \times \text{Max}(XESO_i - PV_i, 0)$ $MP_{i, \text{ypt}}$: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양수발전한 실적시간대의 양수발전기 MP_{it}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발전시간대 최저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PE_i = \text{Min}(MP_{i,9-24}) \times XPE_i \times \eta_i \times 1,000 + \dots$ <신설>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양수동력 실적시간대 최저MP로 정산한다. <중 략> $CONPE_i = \text{Min}(MP_{i, \text{ypt}}) \times XPE_i \times \eta_i \times 1,000 + \dots$ $MP_{i, \text{ypt}}$: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동력한 실적시간대의 양수발전기 MP_{it}						
주요 토의내용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 데 동의함 - 향후 ESS, 양수 등 전원이 현물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심의 결과 : 원안가결							

비용평가위원회

2025년도 제5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5. 5. 29.(목) 15:30		
장	소	스파크플러스 삼성2호점		
참 여 현 황	참여위원 (8명)	주성관 위원장, 최용욱 위원, 조준오 위원, 조홍중 위원, 정구형 위원, 오홍복위원(代 조현진), 김봉빈위원(代 고동신), 박만근 위원		
	불참위원 (1명)	엄재영 위원		

<회의내용>

1. 보고안건 (원안접수)

○ 제1호 :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변경 보고

○ 제2호 : ‘25년 제4차 비용평가위원회 결과 요약

○ 제3호 : ‘25년 제4차 비용평가실무협의회 결과 요약

○ 제4호 : 한국가스공사 LNG 단가 조정에 따른
‘25년 5월 적용 LNG 열량단가 변경사항 보고

2. 의결안건

○ 제1호 : ‘25년 6월 적용 중앙급전발전기 열량단가 산정(안)

○ 제2호 : 중앙급전발전기 입출력특성계수 산정(안)
(삼척그린#1, 삼천포#4, 강릉안인#1, 삼척화력#2)

○ 제3호 : ‘25년 여름철 적용 중앙급전발전기 기동비용 산정(안)

○ 제4호 : ‘25~‘26년 적용 발전기별 정적손실계수, 용량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 가중평균 산정(안)

○ 제5호 : 시운전 예정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비용(안) (음성천연가스#1CC)

○ 제6호 : 비용평가실무협의회 위원 변경(안)

3. 심의·의결 결과

안건수	원안가결	의결보류	수정가결	부 결
6건	6건	-	-	-

작 성 자

시장운영처

시장운영팀

차장 전성은

계통평가위원회

2025년 제5차 계통평가위원회 회의록					
일 자	2025. 5. 28.(수)				
장 소	스파크플러스 삼성역				
참 여 현 황	참여위원 (8명)	손성용 위원장, 박성열 위원(代 류영규), 김강원 위원 오현진 위원(代 최명환), 이경운 위원, 임경규 위원, 국경수 위원, 송화창 위원			
	비참여위원 (3명)	강부일 위원, 허건 위원, 허진 위원			
	기 타	간사 및 발표자			
회의내용					
1. 보고안전					
☐ (제1호) '25년 제4차 계통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 원안접수					
☐ (제2호) '25년 제5차 계통평가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원안접수					
☐ (제3호) 계통평가위원회 위원 변경 : 원안접수					
☐ (제4호) '25년 하향예비력 확보량 재산정 : 원안접수					
☐ (제5호) '25년 여름철 전력계통 운영방안 : 원안접수					
☐ (제6호) '24년 신뢰도 실적 분석평가 보고 : 원안접수					
○ 기저발전 운전패턴 변화 등 재생e 증가에 따른 계통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전압불안정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 및 체계 개편 필요					
2. 의결안전					
☐ (제1호) 발전기 동특성자료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2호) 다조합 복합발전기 최소출력 규정개정(안) : 원안가결					
○ 다조합 비용제도 시행에 있어 현행 발전계획프로그램 기능제약으로 인한 오차발생에 대해 보완 대책 필요					
☐ (제3호) 시운전 발전기 특성자료 신규등록(안) : 원안가결					
☐ (제4호) 발전기 특성자료 변경(안) : 원안가결					
○ 많은 발전사와 적극적인 유연성 개선 사례에 대한 공유 필요					
3. 심의·의결결과					
안건수	원안가결	의결보류	수정가결	조건부 가결	부 결
4	4	-	-	-	-
작 성 자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최홍석				

붙임. 2025년 제5차 계통평가위원회 의사록

이처럼 전력시장·계통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한정적이며,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에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대다수가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이며, 구체적 회의 내용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만 공개된다는 점에서, 다른 회원사들은 결과를 통지받는 수동적 지위밖에 갖지 못한다.

2. 개선방안: 회원사 중심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정보공개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규칙 및 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결권한을 보유한 위원회는 전력시장·계통운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대표직을 배제하고 전문가로 대체하며, 실무협의회는 회원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사업자 종류별, 주요 발전원별 회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엄격히 실행하는 것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하여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특정 회원사에 재직하였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경우 위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규칙 및 규정 개정의 공정성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사전에 회의개최 사실 및 소집사항을 공지해야 하고, 사후 회의록은 참석위원, 안건별 제안자, 제안내용 및 근거, 각 안건에 대한 위원별 발언내용을 포함한 심의내용, 의결권 행사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무협의회의 경우 의결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원회보다는 정보공개 의무를 완화할 여지가 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실무협의회 위원은 특정 사업자 종류 및 발전원을 대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을 검토·조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와 같이 사전 및 사후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회원총회 개선방안: 회원총회 권한 확대 및 소수회원권 보장

1. 문제점: 회원총회의 권한 및 소수회원권 미비

회원총회는 회원사로 구성된 전력거래소의 사단법인적 특성에 근거한 기관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한다. 전력거래소가 가진 두 가지 특성,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자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 가운데 후자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관이 바로 회원총회이다. 그러나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의 회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라는 두 기관에 대한 규정을 복합적으로 준용하고 있는데, 의결권 배분방식은 주주총회와 유사하게 정하면서 소수회원권의 보장은 미흡하여 회원총회 운영에 괴리가 있다. 회원총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되는데,²³ 이는 다른 회원들과 달리 전력거래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정회원의 의결권 역시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배분된다.²⁴ 이는 사원총회의 경우 1사원이 1개의 결의권을 갖는 것과 달리 주식회사에서 1주식이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 즉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 것과 유사하다.

의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원총회에서 의결하는데, 2025년도 기준 의결권 총 수는 66,000개로, 공급측과 구매측에 각 33,000개씩 부여하고 있다.²⁵ 의결권 배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의결권은 77.8%, 민간 사업자의 의결권은 22.2%이다. 결국 현재의 거래량에 따른 의결권 배분 방식 하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외의 회원사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23 전력거래소 회원의 종류에는 정회원, 준회원 및 공급인증서 회원이 있다. 주로 정회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전기(신)사업자, 준회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지 않는 전기(신)사업자로 구분되며, 공급인증서 회원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자이다(정관 제9조).

24 정관 제10조, 제48조 제1항

한편,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위 공급 전력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위 수수료는 정회원이 납부하는 전력거래수수료와 동일함에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준회원으로 분류되어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즉, 다른 준회원들은 전력거래소에 전력거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동일한 수수료를 전력거래소에 지급함에도 의결권 부여 여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25 각 사업자 의결권 수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의결권수(V) = (33,000-X) × Y + 1

- V: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전력거래량이 없는 회원은 제외

- X: 거래실적이 있는 정회원의 수

- Y: 전체 전력거래량 대비 해당회원의 전력거래량 비율

회원사 의결권 배분 현황²⁶

구분		전력거래량 비율	의결권	의결권비율
전력구매측	한국전력	99.798%	32,923	49.8835%
	민간	0.202%	77	0.1165%
전력공급측	발전자회사	67.669%	18,432	27.927%
	민간	32.331%	14,568	22.073%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83.7335%	51,355	77.8105%
민간		16.2665%	14,645	22.1895%

2. 개선방안: 회원총회 권한 확대 및 소수회원권 보장

회원총회 권한 확대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²⁷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에 따르면, 총회는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 등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한이 있으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전력거래소 회원총회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사항(정관변경, 결산) 외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는 것과 반대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갖는 사단법인의 특성에 비춰, 산업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회원총회에 의결권한을 부여하고, 회원총회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사회가 회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는 구조로 개정이 필요하다. 유의할 점은, 현재와 같은 의결권 배분 구조하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의사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후술하는 소수회원권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6 전력거래소 자료

27 「민법」 제68조

정관 및 산업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비교

전력거래소 정관	산업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제4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삭 제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법인의 해산 등 기타 중요한 사항
제53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 예산 및 운영계획, 출자총액 및 결산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장기차입금의 차입 4.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5.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 보증 6. 주요내규의 제정 및 개폐 7. 총회부의 안건 8.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 10.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사. 기타 주요사항

소수회원권 보장

전력거래소 정관상 소수 회원사에게 허용된 권리는, 총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다.²⁸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된다.²⁹ 그러나 사원총회의 경우 각 사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회원사에 1개의 의결권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배분하면서 소수회원권은 사단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소수회원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원사가 동일한 의사를 가져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제 소수회원사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의결권 배분방식과 균형을 맞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³⁰, 전력거래소의 회원총회 역시 이를 준용하여 '총 의결권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8 정관 제44조

29 「민법」 제70조 제2항

30 「상법」 제366조 제1항

또한 「상법」상 보장되는 다른 소수주주권을 도입하여 소수회원권을 보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주주제안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 업무 조사를 청구하는 업무 검사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이를 통해 소수 회원사의 의사가 반영된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이 공익 및 전체 회원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1 「상법」 제363조의2, 제467조

V. 결론: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개선방향 제언

전력거래소 출범 당시 전력산업 구조는 발전자회사의 대규모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설비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일한 형태였다. 그러나 다양한 분산형 전원의 증가와 이들 특성에 맞춘 새로운 사업 유형의 성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다원화된 전력산업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위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도매시장의 운영, 시장 및 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기구의 확충 등 다양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시장제도를 설계하고 시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조적 변화의 핵심 축인 전력거래소가,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의사결정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 확대 및 선임방법 개편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에 대해 설립 당시 출자 회원사로 자격을 제한한 정관 규정을 폐지하고, 회원사라면 누구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임방법으로 전체 회원사 가운데 산업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법,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법, 회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위원회: 회원사 중심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정보공개

규칙·규정의 개정 등에 대해 의결권한을 보유한 위원회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건을 검토·조정하는 실무협의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자 종류별, 주요 발전원별 회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세부 논의내용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실무협의회 회의록 역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회원총회: 회원총회 권한 확대 및 소수회원권 보장

회원총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수회원권 행사 요건을 총 의결권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외에 회원제안권, 업무감사권을 도입해야 한다.

부록

전문가 명단

- 김범조, KTI컨설팅 2본부 본부장/전무
- 김성수, 한국공학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역경제학박사
- 전우영,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경제학 박사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

발간일 2025년 9월
저자 김건영 | 기후솔루션 변호사
디자인 Nature Rhythm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및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리서치, 법률, 대외 협력, 커뮤니케이션 등의 폭넓은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실질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